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6682

제안연월일: 2024. 12.

제 안 자: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상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14호	김용태의원	2024. 8. 2.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024.9.24.)
	제2551호	김용태의원	2024. 8. 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024.9.24.)
	제3331호	정성국의원	2024. 8.29.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 (2024.11.19.)

-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11.26.)는 이상 3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교육위원회(2024.11.27.)는 이상 3 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

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지역의 의견과 정부 고등교육 정 책의 기본방향을 함께 반영해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3항 후단 신설).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의 출제 전후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능 출제에 따른 사교육관련 영리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출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에 대해 위촉일 이후 3년동안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영리행위 확인을 위해 국세청장에게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려고 하는 사람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0항 신설 등).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 7제1항 신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4조에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제위원의 지정, 위촉 절차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①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출제 위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1. 납세자 인적사항
- 2. 사용목적

- ② 국세청장은 제1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출제위원은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날부터 3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사용(해당 학원의 수강생에게만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교재 및 자료의 집필·검토·자문·제작(이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7의 제목 중 "등"을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4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4조제13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한 자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4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영리행위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출제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조정) ①·② (생 및 협의·조정) ①·② (현행과 략) 같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교 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 는 사업을 신설 · 변경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과의 부합 여부, 중 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 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법」 제2조제1 항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 ⑨ (생 략) ~ ⑨ (현행과 같음) ⑩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 설>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 다)을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 다. 이 경우 출제위원의 지정, <신 설>

<신 설>

<신 설>

위촉 절차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령으로 정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출제위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1. 납세자 인적사항
- 2. 사용목적
- ② 국세청장은 제1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출제위원은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날부터 3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학원 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 <신 설>

① (생 략)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시 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 ④ 제3항에----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에

관한 법률 |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사 용(해당 학원의 수강생에게만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 는 교재 및 자료의 집필·검토 ·자문·제작(이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ㆍ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대 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 고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협 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 인 유학생 유치ㆍ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현형	생 제1항과	같음)
-------	--------	-----

<u>(3)</u>	<u>세2양에</u>

대한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벌칙) ① • 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1. (생략)

<u><신 설></u>

2. ~ 4. (생략)

제64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u>
1. (현행과 같음)
1의2. 제34조제13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
니하고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한 자

2. ~ 4. (현행과 같음)